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합병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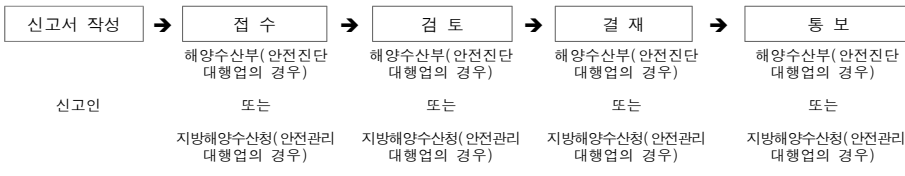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중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